[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2010066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2년 12월 10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2년 12월 09일]

[www.gguldak.com]

꿀삐닭강정

정 보 공 개 서

[(주)에스엔인더스트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주)에스엔인더스트리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10층 10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1544-9552]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2-448-955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관리부 / 070-4077-3865]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SN INDUSTRY
successful navigator of industry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에스엔 인더스트리	꿀삐닭강정 외 2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10층 10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0.11.04		2010.11.06	이상준	1544-9552	02-448-9552
	법인등록번호	110111-4464717		사업자등록번호		105-87-5108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성명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이상준	꿀삐닭강정 외 2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10층 10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상준	1544-9552	02-448-9552

관계	상호/성명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최민정	꿀삐닭강정 외 2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10층 10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상준	1544-9552	02-448-955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꿀삐닭강정] 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꿀삐닭강정	-
상 호	꿀삐닭강정 OO점	-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41-2012-0013435 (2012.04.19.)

		등록번호 41-0264-2690000 (2013.07.18.)
광 고	해당없음	-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91,121	317,140	73,980	1,458,041	8,562	15,553
2020년	185,533	127,106	58,427	1,192,205	8,306	36,933
2019년	152,921	131,427	21,493	1,301,165	-24	15,297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꿀삐닭강정], [복고다방], [씨앗호떡] 등 3개 브랜드의 외식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별 또는 영업표지별로 그 매출액 분류 및 산정이 어려워 그 합계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매출액 중에는 [꿀삐닭강정]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외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사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경력	
			년도	경력내용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상준	대표 이사	2010.11.04~현재	(주)에스엔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최민정	사내 이사	2021.01.20~현재	(주)에스엔인더스트리 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1년 12월 31일	1	1	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	가맹 사업 경영	2012.12.~현재	꿀삐닭강정(등록번호: 20120100661)이라는 브랜드의 치킨업종 경영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	가맹 사업 경영	2012.12.~현재	씨앗호떡(등록번호: 20130100457)이라는 브랜드의 분식업종 경영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	가맹 사업 경영	2015.09.~현재	복고다방(등록번호: 20151018)브랜드의 커피업종 경영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	가맹 사업 경영	2016.03.~2020.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부산오뎅 떡볶이(등록번호 : 20160896)브랜드의 분식 업종 경영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	가맹 사업 경영	2016.03.~2018.11.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카페 티맑은(등록번호: 20160281)브랜드의 음료(커피외)업종 경영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	가맹 사업 경영	2014.03.~2018.11.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가디스(등록번호: 20140626)브랜드의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업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인)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鳥 꿀삐 닭강정	상표권 (43류)	출원 2012.04.19. 등록 2013.07.18.	출원번호 41-2012-0013435 등록번호 41-0264-2690000	(주)에스엔인더스트리	2023.07.18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1) 귀하의 가맹점소재지에서 위 상표가 표시된 간판 및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 및 사용하여 영업을 영위할 권리

(2)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위 상표를 이용하여 식품접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3) 귀하의 가맹점소재지에서 당사의 서면 동의를 얻은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

(4) 기타 당사의 서면 동의를 얻은 상표의 사용권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꿀삐닭강정]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12년 4월 15일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에스엔 인더스트리	꿀삐닭강정	이상준	2012년 4월 ~2014.08.18.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1길 19 3층
㈜에스엔 인더스트리	꿀삐닭강정	이상준	2014.08.19. ~2015.11.27.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1 (상수동, BR엘리텔A동 402호)
㈜에스엔 인더스트리	꿀삐닭강정	이상준	2015.11.27. ~2021.01.1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705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2차)
㈜에스엔 인더스트리	꿀삐닭강정	이상준	2021.01.20. ~현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10층 1003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3. [꿀삐닭강정] 업종

영업표지	업종	
꿀삐닭강정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닭강정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꿀삐닭강정]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19.12.31.			2020.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1	21	-	25	25	-	26	26	-
서울	3	3	-	3	3	-	3	3	-
부산	-	-	-	-	-	-	-	-	-
대구	1	1	-	1	1	-	1	1	-
인천	-	-	-	-	-	-	-	-	-
광주	-	-	-	-	1	-	1	1	-
대전	-	-	-	-	-	-	-	-	-
울산	2	2	-	2	2	-	1	1	-
세종	-	-	-	-	-	-	-	-	-
경기	3	3	-	4	4	-	5	5	-
강원	1	1	-	1	1	-	1	1	-
충북	-	-	-	-	-	-	-	-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2	2	-	1	1	-	1	1	-
전남	1	1	-	-	-	-	1	1	-
경북	1	1	-	2	2	-	2	2	-
경남	6	6	-	9	9	-	9	9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꿀삐닭강정]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19	21	5	-	5	1	21
2020	21	7	-	3	-	25
2021	25	3	-	2	-	26

6.[꿀삐닭강정]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꿀삐닭강정]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19. 12.31.	2020. 12.31.	2021. 12.31.
가맹본부	(주)에스엔인 더스트리	씨앗호떡	20130100457	분식	7/0	4/0	4/0
가맹본부	(주)에스엔인 더스트리	꿀삐닭강정	20120100661	치킨	21/0	25/0	26/0
가맹본부	(주)에스엔인 더스트리	복고다방	20151018	커피	23/0	20/0	34/1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꿀삐닭강정] 가맹점은 실제 가맹점 관리에서 당사가 POS와 회계보고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가 차지하는 물류 공급의 비중도 적고 불규칙이이서 대부분 외주 위탁사를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꿀삐닭강정] 브랜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1년	26	1517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꿀삐닭강정]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1년]에 [꿀삐닭강정] 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꿀삐닭강정] 가맹사업 외에 [씨앗호떡], [복고다방]가맹사업도 경영하나 영업표지별로 광고비 및 판촉비를 분류하기가 어려워 [꿀삐닭강정] 가맹사업 외의 광고비 및 판촉비가 포함되어 있사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1.01~12	53,524	53,524		
광고	신문, 인터넷등	2021.01~12	53,524	53,524		

당사에서 [2021년]에 [꿀삐닭강정] 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는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기 어려워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의 총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 은행 잠실역 지점	기업서비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7	02) 3434-0211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ㅇ 은행영업점 : 본인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예치
- ㅇ 인터넷뱅킹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가맹금예치금 예치
- ㅇ 인터넷뱅킹메뉴 : 은행홈페이지-기업서비스-가맹금예치제도-가맹점사업자-가맹금예치
- ㅇ「가맹금예치금」예치내역 조회 : 가맹점사업자가 인터넷뱅킹으로 본인이 예치한 가맹금예치금 내용 확인 가능

▸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꿀삐닭강정]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내용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시	상호·상표 사용 및 영업지역 보장의 대가(5,500)	해지 시	계약 기간 경과에 따라 반환
교육비	2,200	계약 체결 시	교육 훈련비	개시 전	교육개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소멸성)

2) 보증금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귀하의 잔존 채무를 제외하고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VAT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 체결 시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등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를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금 구백칠십만원(₩9,700,000)(VAT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금액
합계	9,700
가맹비	5,500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2,000(VAT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Ⅳ-1-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약 33㎡ 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	33,330		-	-	-
인테리어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16,500	1,650	계약 체결 시	시공 전 계약취소	추가 평당 1,650
간판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3,850		자체 계약	시공 전 계약취소	추정치
설비 및 집기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별첨2참조)	9,350		계약 체결 시	설치 전 계약취소	-
초도물품	협력업체 (별첨2참조)	3,630		납품 후 즉시	입고 전 계약취소	-

※ 냉난방 비용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도면면적에 따라 실측 후 산정)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추후 선정 예정입니다.
※ 귀하가 당사 지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 추가로 지급받는 비용은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

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입지선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뢰할 시 별도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가 점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제한 없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음
종업원	제한 없음	만19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꿀삐닭강정]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인테리어	목공사. 도장공사. 타일 공사, 천정공사. 전기 및 조명공사, 바닥재 공사 등	가맹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	가맹본부 또는 한미 (협력업체)
설비 및 집기	AOF시스템, 냉장고, 냉동고 외 집기일체	가맹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별첨2참조)
초도물품	영업에 필요한 식품재료 및 부자재 일체 명함 등 소모품 일체	가맹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	협력업체 (별첨2참조)
간판	전면 간판 등	권장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의탁자	4인 의탁자 등	자율	자율
그 밖의 필요비용	철거, 외부공사, 화장실, 냉난방기, 가스, 전기증설, 방염공사, 등 소방설비, 정화조 및 외부상하수도 공사 각종 인허가비용, 전화개설 등	자율	자율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별도)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월 로열티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33만원 or 매출의 3%	다음 달 5일	없습니다.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1)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협의하여 결정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변경 전	간판을 변경한 후에는 반환 불가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2)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협의하여 결정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전	교체·보수한 후에는 반환 불가	-
교육 및 훈련 비용	가맹본부	Ⅷ-2 참고				-
광고 및 판촉 비용	가맹본부	V-8 참고				-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Ⅶ-1 참고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4%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월 계속 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제3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물류를 공급하는 관계로 귀하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간판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구분 (기준: 2021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처리 재고관리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에 관하여 감독	가맹본부의 요청시	문의 (070-4077-3865)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맹금은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해당 부분(월할계산)과 교육비 금 이백이십만원(₩2,200,000)(VAT포함) 및 계약이행보증금 금 이백만 원(₩2,000,000)(VAT없음)입니다.

※ 가맹점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철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주가 부담합니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기타 가맹본부의 상호 및 상표, 가맹본부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된 시설 인테리어 및 구조물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의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구입 및 임차

1) 세부사항

귀하가 [꿀삐닭강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구 분	세부내역	거래형태	거래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인테리어	목공사. 도장공사. 타일 공사, 천정공사. 전기 및 조명공사, 바닥재 공사 등	권장	가맹본부 또는 한미 (협력업체)	X
설비 및 집기	AOF시스템, 냉장고, 냉동고 외 집기일체	별첨2 참조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X
원부재료	원부재료 (별첨2참조) 명함 등 소모품 일체	별첨2 참조	협력업체 (별첨2참조)	X
간판	전면 간판 등	권장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X
그 밖의 필요비용	철거, 외부공사, 화장실, 냉난방기, 가스, 전기증설, 방염공사, 등 소방설비, 정화조 및 외부상하수도 공사 등 각종 인허가비용, 전화개설 등	자율	-	

① 귀하가 [꿀삐닭강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여야 할 품목은 [별첨2]와 같습니다.

② 귀하께서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귀하가 [꿀삐닭강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한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은 [별첨3]과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상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꿀삐닭강정]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2) 당사는 [꿀삐닭강정]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3.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 5. 참조	당사가 지정한 메뉴 이외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품공급 중단 또는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 제한내용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책임 :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판매가격의 결정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조언 내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은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권장(조언)가이며, 가맹점이 판매촉진 등의 필요로 <권장가격>과 다르게 판매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빠짐없이 가맹본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 후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메뉴별 권장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권장가격(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5. 참조	별첨 5. 참조	서면 통보 등	-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당사와 동일한 닭강정 및 치킨을 판매하는 업종의 가맹사업	꿀삐닭강정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반경 1km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를 하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여부 회신 - 합의 결과를 토대로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

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꿀삐닭강정]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꿀삐닭강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1	58%	0%	39%	3%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1	70%	3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가맹계약 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 2년
- 재계약시 계약기간(재계약 시작일로부터) : 1년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계약서 제6조 제4항)

☞ 가맹계약의 계약기간 경과 후에는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재계약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재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합니다.

☞ 가맹본부가 상기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거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 제6조 제2항).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제6조 제5항 각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2)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계약서 제36조 각항)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의 변경 사항(명의변경, 점포 규모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에게 허위의 사실을 통보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꿀삐닭강정』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 평가표의 평가치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기준이 3개월간 3회 이상 위반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상품을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제조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공급대금을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받은 상품을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 고객 판매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자점 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3일 이상 점포운영을 중단하거나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및 매출에 관련된 통지나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계약서 제45조 제2항)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맺고 있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15일 전에 가맹본부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본부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가맹본부가 전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당사의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금 잔여 기간 해당 부분(월할계산)과 교육비 금 이백이십만원(₩2,200,000)(VAT포함) 및 계약이행보증금 금 이백만원(₩2,000,000(VAT없음)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양수인은 전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양도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및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 · 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맹점사업자가	원칙으로는 대행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

	가능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빙자료 검토 후 승인 하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업무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꿀삐닭강정]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당사와 동일한 닭강정 및 치킨을 판매하는 업종의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 6 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휴업하기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유가 정당할 시 가맹본부는 승인합니다.
가맹점 및 상권의 특성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일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종업원 수는 1~2 명(10평 기준)이며,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에 의합니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회계장부 열람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의 점검이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광고 및 행사	브랜드,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광고 직전분기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당사에서 광고의 세부사항 결정 →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 당사에 광고 시행 전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 광고 시행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팜플렛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멤버쉽 포인트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 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하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 기타 선전매체의 제작, 배포 등에 있어서 당사의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조항 및 표준지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귀하 및 귀하의 직원은 당사가 대여하는 운영매뉴얼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 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가맹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당사는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영업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의무 등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 등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중 귀하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당사의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1,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0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VAT포함/33㎡ 기준)

구 분	내 용	기 간	비 용
합계		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일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고.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목록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일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가맹점 개설 승인	1일	-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및 기타비용 입금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부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
가맹금 예치	-가맹비 및 교육비 예치	계약서 작성 후 즉시	-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3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2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공사 완료 후 집기 입고	약 5일	
교육실시	-개점 전 교육 실시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2일	
오픈 전 점검	각종 인허가 종업원 모집 기타 오픈 준비 (가 오픈)	3일	-
오픈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즉시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 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의 중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비용분담 등에 대한 기준을 두었으나 현재 판매촉진에 관한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사업본부 070-4077-3865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사업본부 070-4077-3865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꿀삐닭강정]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꿀삐닭강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메뉴 레시피 교육, 점포 운영 및 판매서비스 교육	개별 교육 집단 강의 실습 교육	개점 전	필수 교육
수시교육	운영상 필요한 부분 및 신상품 출시에 따른 교육	개별 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전	시행시 이수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 교육	교육실시 전	필요시 이수
재교육	부족한 교육의 재교육	개별 교육	교육실시 전	필요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꿀삐닭강정]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2일 이상	무료 교육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시행시 실비부담	시행시 이수
특별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필요시 실비부담	필요시 이수
재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필요시 실비부담	필요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당사에서 정한 교육 및 훈련을 불참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상품공급의 중단 및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귀하의 가맹점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1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1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1)](2019.03.20 개정) (제1쪽)

표준재무상태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105-87-51085	법인명	(주)에스엔인더스트리	2021 년 12 월 31 일현재
법인등록번호	110111-4464717		(통합)-2021년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유동자산	1	235,267,558	(3)기타유동자산	67	48,307
(1)당좌자산	2	197,486,053	1.미수수익	68	
1.현금 및 현금성자산	3	124,619,549	2.선급비용	69	34,917
2.단기예금	4		3.이연법인세자산	70	
3.유가증권	5		4.기타유동자산	71	13,390
가.단기매매증권	6		가.선급법인세	72	13,390
나.유동성매도가능증권	7		나.부가가치세대급금	73	
다.유동성만기보유증권	8		다.선급관세	74	
4.매출채권	9	3,773,731	라.기타유동자산	75	
가.외상매출금	10	3,773,731	Ⅱ.비유동자산	80	155,853,586
(대손충당금)	11		(1)투자자산	81	
나.받을어음	12		1.장기예금	82	
(대손충당금)	13		2.장기투자증권	83	
다.기타매출채권	14		가.매도가능증권	84	
(대손충당금)	15		나.만기보유증권	85	
5.단기대여금	24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86	
가.관계회사	25		4.장기대여금	87	
(대손충당금)	26		가.관계회사	88	
나.주주 임원 직원	27		(대손충당금)	89	
(대손충당금)	28		(현재가치할인차금)	90	
다.기타	29		나.주주 임원 직원	91	
(대손충당금)	30		(대손충당금)	92	
6.미수금	31	11,638,587	(현재가치할인차금)	93	
가.분양미수금	32		다.기타	94	
(대손충당금)	33		(대손충당금)	95	
나.공사미수금	34		(현재가치할인차금)	96	
(대손충당금)	35		5.투자부동산	97	
다.기타	36	11,638,587	가.토지	98	
(대손충당금)	37		나.건물	99	
7.선급금	38	57,454,186	다.기타투자부동산	100	
8.기타당좌자산	39		6.기타투자자산	105	
(2)재고자산	44	37,733,198	(2)유형자산	110	15,352,586
1.상품	45	37,733,198	1.토지	111	
2.제품	46		(손상차손누계액)	112	
3.반제품	47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3	
4.재공품	48		2.건물	114	
5.부산물	49		(감가상각누계액)	115	
6.원재료(원자재)	50		(손상차손누계액)	116	
가.원재료	51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7	
나.부재료	52		3.구축물	118	
다.기타원재료	53		(감가상각누계액)	119	
7.가설재	54		(손상차손누계액)	120	
8.저장품	55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1	
9.미착상품(미착재료)	56		4.기계장치	122	
10.완성주택	57		(감가상각누계액)	123	
11.미완성주택	58		(손상차손누계액)	124	
12.용지(건설업)	59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5	
13.완성공사(주택외)	60		5.선박 항공기	126	
14.미완성공사(주택외)	61		(감가상각누계액)	127	
15.기타재고자산	62		(손상차손누계액)	128	

(제2쪽)

표준재무상태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105-87-51085	법인명	(주)에스엔인더스트리	2021 년 12 월 31 일현재
법인등록번호	110111-4464717		(통합)-2021년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9		(대손충당금)	203	
6.건설용장비	130		(현재가치할인차금)	204	
(감가상각누계액)	131		2.장기미수금	205	
(손상차손누계액)	132		가.분양장기미수금	206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3		(대손충당금)	207	
7.차량운반구	134		(현재가치할인차금)	208	
(감가상각누계액)	135		나.공사장기미수금	209	
(손상차손누계액)	136		(대손충당금)	210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7		(현재가치할인차금)	211	
8.건설중인유형자산	138		다.기타장기미수금	212	
(손상차손누계액)	139		(대손충당금)	213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0		(현재가치할인차금)	214	
9.시설장치	141		3.장기선급금	215	
(감가상각누계액)	142		(대손충당금)	216	
(손상차손누계액)	143		4.보증금	217	140,500,000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4		가.임차보증금	218	140,000,000
10.공구 기구 비품	145	9,635,727	(대손충당금)	219	
(감가상각누계액)	146	9,451,055	나.기타보증금	220	500,000
(손상차손누계액)	147		(대손충당금)	221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8		5.이연법인세자산	222	
11.기타유형자산	149	15,167,914	6.기타비유동자산	223	
(감가상각누계액)	150		자산총계(Ⅰ+Ⅱ)	228	391,121,144
(손상차손누계액)	151		Ⅰ.유동부채	229	315,058,952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52		1.매입채무	230	35,622,434
(3)무형자산	169	1,000	가.외상매입금	231	35,622,434
1.영업권	170		나.지급어음	232	
2.산업재산권	171		다.기타매입채무	233	
가.특허권	172		2.단기차입금	234	194,999,100
나.상표권	173		가.관계회사	235	
다.실용신안권	174		나.주주 임원 직원	236	
라.의장권	175		다.기타	237	194,999,100
마.기타산업재산권	176		3.미지급금	238	35,470,873
3.광업권	181		가.미지급법인세	239	757,867
4.어업권	182		나.미지급배당금	240	
5.차지권	183		다.기타미지급금	241	34,713,006
6.개발비	184		4.선수금	242	47,411,685
7.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185		가.분양선수금	243	
8.소프트웨어	186	1,000	나.공사선수금	244	
9.저작권	187		다.기타	245	47,411,685
10.제이용권	188		5.예수금	246	1,442,080
11.기타무형자산	189		가.부가가치세예수금	247	
(4)기타비유동자산	194	140,500,000	나.제세예수금	248	1,442,080
1.장기매출채권	195		다.예수보증금	249	
가.장기외상매출금	196		라.기타예수금	250	
(대손충당금)	197		6.미지급비용	251	112,780
(현재가치할인차금)	198		7.선수수익	252	
나.장기받을어음	199		8.유동성장기부채	253	
(대손충당금)	200		가.유동성장기차입금	254	
(현재가치할인차금)	201		(현재가치할인차금)	255	
다.장기기타매출채권	202		나.유동성사채	256	

(제3쪽)

표준재무상태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105-87-51085	법인명	(주)에스엔인더스트리(통합)-2021년	2021 년 12 월 31 일현재
법인등록번호	110111-4464717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현재가치할인차금)	257		13.장기기타보증금	327	
다.기타유동성장기부채	258		14.기타비유동부채	328	
(현재가치할인차금)	259		부채총계(Ⅰ+Ⅱ)	333	317,140,200
9.단기충당부채	268		Ⅲ.자본금	334	50,000,000
가.단기공사손실충당부채	269		1.보통주자본금	335	50,000,000
나.단기제품보증충당부채	270		2.우선주자본금	336	
다.단기반품추정충당부채	271		Ⅳ.자본잉여금	337	
라.단기하자보수충당부채	272		1.주식발행초과금	338	
마.단기기타충당부채	273		2.감자차익	339	
10.이연법인세부채	278		3.합병차익	340	
11.기타유동부채	279		4.자기주식처분이익	341	
Ⅱ.비유동부채	284	2,081,248	5.재평가적립금	342	
1.사채	285		6.기타자본잉여금	343	
(현재가치할인차금)	286		Ⅴ.자본조정	348	
2.전환사채등신종사채	287		1.주식할인발행차금	349	
(현재가치할인차금)	288		2.감자차손	350	
3.장기차입금	289	2,081,248	3.자기주식	351	
가.관계회사	290		4.미교부주식배당금	352	
(현재가치할인차금)	291		5.자기주식처분손실	353	
나.주주 임원 직원	292	2,081,248	6.부의지분법자본변동	354	
(현재가치할인차금)	293		7.주식매수선택권	355	
다.기타	294		8.기타자본조정	356	
(현재가치할인차금)	295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	
4.장기매입채무	296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62	
가.장기외상매입금	297		2.해외사업환산손익	363	
(현재가치할인차금)	298		3.지분법자본변동	364	
나.장기지급어음	299		4.파생상품평가손익	365	
(현재가치할인차금)	300		5.재평가잉여금	366	
다.장기기타매입채무	301		6.기타	367	
(현재가치할인차금)	302		Ⅶ.이익잉여금	372	23,980,944
5.장기미지급금	303		1.이익준비금	373	
(현재가치할인차금)	304		2.재무구조개선적립금	374	
6.장기선수금	305		3.「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375	
가.장기분양선수금	306		4.기타임의적립금	376	
나.장기공사선수금	307		5.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81	23,980,944
다.장기기타선수금	308		자본총계(Ⅲ+~Ⅶ)	382	73,980,944
7.퇴직급여충당부채	309		부채와 자본총계	383	391,121,144
8.퇴직연금미지급금	310				
(국민연금전환금)	311				
(퇴직보험예치금)	312				
(퇴직연금운용자산)	313				
9.장기충당부채	314				
가.장기공사손실충당부채	315				
나.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316				
다.장기반품추정충당부채	317				
라.장기하자보수충당부채	318				
마.장기기타충당부채	319				
10.제준비금	324				
11.이연법인세부채	325				
12.장기임대보증금	326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 서식 (1)](2018.03.21 개정)

(2쪽 중 제1쪽)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법 인 명	(주)에스엔인더스트리(통합)-2021년
		사업자등록번호	105-87-51085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매출액	1	1,458,041,007	(7)지분법손실(지주회사)	60	
1.상품매출	2	1,410,868,792	(8)기타매출원가	61	
가.국내상품매출	3	1,410,868,792	1.기초재고액	62	
나.수출상품매출	4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63	
2.제품매출	5		3.기말재고액	64	
가.국내제품매출	6		4.타계정대체액	65	
나.수출제품매출	7		Ⅲ.매출총손익	66	523,161,069
3.공사수입	8		Ⅳ.판매비와관리비	67	514,598,323
가.국내공사수입	9		1.급여	68	223,425,345
나.해외공사수입	10		가.임원급여	69	22,500,000
4.운송수입	11		나.직원급여	70	200,925,345
가.국내운송수입	12		다.임원상여금	71	
나.해외운송수입	13		라.직원상여금	72	
5.부동산임대수입	14		마.기타	73	
가.국내임대수입	15		2.퇴직급여	74	10,468,816
나.해외임대수입	16		가.임원퇴직급여	75	
6.분양수입	17		나.직원퇴직급여	76	10,468,816
가.국내분양수입	18		다.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77	
나.해외분양수입	19		3.보험료	78	6,721,393
7.사용료 로열티수입	20		4.복리후생비	79	14,255,545
가.국내사용료 로열티수입	21		5.여비교통비	80	7,020,245
나.해외사용료 로열티수입	22		6.임차료	81	101,867,790
8.지분법이익(지주회사)	23		가.부동산임차료	82	89,887,490
9.기타매출	24	47,172,215	나.차량 중기임차료(리스료 포함)	83	11,980,300
가. 카페매출	25	47,172,215	다.기타임차료(리스료 포함)	84	
Ⅱ.매출원가	35	934,879,938	7.접대비	85	480,700
(1)상품매출원가	36	934,879,938	8.유형자산감가상각비	86	1,495,236
1.기초재고액	37	11,119,108	9.무형자산상각비	87	45,667
2.당기매입원가	38	961,494,028	가.영업권상각비	88	
3.상품관세환급금(-)	39		나.기타무형자산상각비	89	45,667
4.기말재고액	40	37,733,198	10.세금과공과	90	8,565,404
5.타계정대체액	41		11.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포함)	91	53,524,781
(2)제조원가	42		12.견본비	92	
1.기초재고액	43		13.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93	5,567,081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44		14.연구비	94	
3.제품관세환급금(-)	45		15.경상개발비	95	
4.기말재고액	46		16.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포함)	96	
5.타계정대체액	47		17.미분양주택관리비	97	
(3)공사원가	48		18.수주비	98	
1.기초재고액	49		가.국내수주비	99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50		나.해외수주비	100	
3.기말재고액	51		19.자문료	101	
4.타계정대체액	52		가.국내자문료	102	
(4)운송원가	53		나.해외자문료	103	
(5)임대원가	54		20.지급수수료	104	28,493,149
(6)분양원가	55		가.국내지급수수료	105	28,493,149
1.기초재고액	56		나.해외지급수수료	106	
2.당기총원가(명세별첨)	57		21.판매수수료	107	
3.기말재고액	58		22.소모품비	108	15,287,448
4.타계정대체액	59		23.통신비	109	5,289,498

(2쪽 중 제2쪽)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법 인 명	(주)에스엔인더스트리(통합)-2021년
		사업자등록번호	105-87-51085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24.운반비	110	9,389,500	22.수수료수익	164	
25.보관료	111		가.국내수수료수익	165	
26.건물 시설관리비(수선비 제외)	112	4,766,350	나.해외수수료수익	166	
27.수선비	113	30,000	23.사용료 로열티수익	167	
28.수도광열비(전기료 제외)	114	1,116,410	가.국내사용료 로열티수익	168	
29.전기료	115	3,976,211	나.해외사용료 로열티수익	169	
30.인쇄비	116	7,179,296	24.정부보조금	170	
31.교육훈련비	117	5,500,000	25.판매장려금수익	171	
32.특허권등 사용료	118		26.위약금 보상금 배상금수익	172	
33.수출입제비용	119		27.상각채권추심이익	173	
34.해외시장개척비	120		28.기타	174	10,512,898
35.외주용역비	121		Ⅶ.영업외비용	179	1,950,794
가.국내외주용역비	122		1.이자비용	180	1,326,873
나.해외외주용역비	123		2.기타대손상각비	181	
36.기타	124	132,458	3.유가증권처분손실	182	
Ⅴ.영업손익	129	8,562,746	가.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83	
Ⅵ.영업외수익	130	10,578,033	나.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84	
1.이자수익	131	65,135	다.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185	
2.배당금수익	132		4.매출채권처분손실	186	
3.임대료	133		5.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187	
4.유가증권처분이익	134		6.재고자산감모손실	188	
가.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35		7.외환차손	189	
나.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36		8.외화환산손실	190	
다.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137		9.지분법손실	191	
5.매출채권처분이익	138		10.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192	
6.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139		가.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93	
7.외환차익	140		나.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194	
8.외화환산이익	141		11.파생상품관련손실	195	
9.지분법이익	142		가.파생상품평가손실	196	
10.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143		나.파생상품거래손실	197	
가.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144		다.기타파생상품손실	198	
나.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145		12.투자부동산처분손실	199	
11.파생상품관련이익	146		13.유형자산처분손실	200	
가.파생상품평가이익	147		가.토지처분손실	201	
나.파생상품거래이익	148		나.건물처분손실	202	
다.기타파생상품이익	149		다.기계장치처분손실	203	
12.투자부동산처분이익	150		라.기타유형자산처분손실	204	
13.유형자산처분이익	151		14.무형자산처분손실	205	
가.토지처분이익	152		15.기부금	206	600,000
나.건물처분이익	153		16.사채상환손실	207	
다.기계장치처분이익	154		17.위약금 보상금 배상금비용	208	
라.기타유형자산처분이익	155		18.기타충당금 준비금전입	209	
14.무형자산처분이익	156		19.전기오류수정손실	210	
15.사채상환이익	157		20.재해손실	211	
16.법인세환급액	158		21.기타	212	23,921
17.충당금 준비금환입	159		Ⅷ.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217	17,189,985
18.전기오류수정이익	160		Ⅸ.법인세비용	218	1,636,067
19.자산수증이익	161		Ⅹ.당기순손익	219	15,553,918
20.채무면제(조정)이익	162				
21.보험차익	163				

재 무 상 태 표

제 11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에스엔인더스트리 (단위 : 원)

과 목	제 11(당)기 금 액		제 10(전)기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98,139,318		108,236,730
① 당 좌 자 산		87,020,210		94,535,922
현 금		46,980		15,720
보 통 예 금		15,079,780		36,876,572
외 상 매 출 금		5,279,102		15,591,050
미 수 수 익		1,483,527		
미 수 금		8,153,230		8,000,000
선 급 금		30,553,136		34,034,620
선 납 세 금		13,390		17,960
임 직 원 등 단 기 채 권		26,411,065		
② 재 고 자 산		11,119,108		13,700,808
상 품		11,119,108		13,700,808
Ⅱ. 비 유 동 자 산		87,394,489		44,684,403
① 투 자 자 산				
② 유 형 자 산		16,847,822		18,577,736
비 품	9,635,727		9,635,72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8,704,286	931,441	7,940,758	1,694,969
시 설 장 치	32,312,728		32,312,728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6,396,347	15,916,381	15,429,961	16,882,767
③ 무 형 자 산		46,667		606,667
소 프 트 웨 어		46,667		606,667
④ 기 타 비 유 동 자 산		70,500,000		25,500,000
임 차 보 증 금		70,000,000		25,000,000
기 타 보 증 금		500,000		500,000
자 산 총 계		185,533,807		152,921,133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27,106,781		120,977,465
외 상 매 입 금		38,761,720		32,922,932
미 지 급 금		18,725,213		34,866,245
예 수 금		1,556,040		810,590
선 수 금		61,934,727		51,270,718
미 지 급 세 금		1,912,698		
미 지 급 비 용		4,216,383		1,106,980
Ⅱ. 비 유 동 부 채				10,450,100

재 무 상 태 표

제 11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에스엔인더스트리 (단위 : 원)

과 목	제 11(당)기 금 액		제 10(전)기 금 액	
임직원등장기차입금				10,450,100
부 채 총 계		**127,106,781**		**131,427,565**
자 본				
Ⅰ. 자 본 금		**50,000,000**		**50,000,000**
자 본 금		50,000,000		50,000,000
Ⅱ. 자 본 잉 여 금				
Ⅲ. 자 본 조 정				
Ⅳ.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Ⅴ. 이 익 잉 여 금		**8,427,026**		**-28,506,432**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8,427,026		-28,506,432
(당 기 순 이 익)				
당기: 36,933,458				
전기: 15,297,753				
자 본 총 계		**58,427,026**		**21,493,56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85,533,807**		**152,921,133**

손 익 계 산 서

제 11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에스엔인더스트리 (단위 : 원)

과 목	제 11(당)기 금 액		제 10(전)기 금 액	
Ⅰ. 매 출 액		**1,192,205,289**		**1,301,165,788**
상 품 매 출	1,192,205,289		1,301,165,788	
Ⅱ. 매 출 원 가		**738,456,373**		**820,124,941**
상 품 매 출 원 가		**738,456,373**		**820,124,941**
기 초 상 품 재 고 액	13,700,808		12,989,828	
당 기 상 품 매 입 액	735,874,673		820,835,921	
기 말 상 품 재 고 액	11,119,108		13,700,808	
Ⅲ. 매 출 총 이 익		**453,748,916**		**481,040,847**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445,442,533**		**481,065,051**
임 원 급 여	30,000,000		41,560,000	
직 원 급 여	181,979,848		165,903,948	
잡 급	68,720		680,107	
퇴 직 급 여	8,451,650		18,054,274	
복 리 후 생 비	14,480,406		22,786,924	
여 비 교 통 비	12,732,013		7,496,072	
접 대 비	131,769		463,400	
통 신 비	1,994,230		2,529,495	
수 도 광 열 비	437,360		500,640	
세 금 과 공 과 금	6,988,341		6,321,232	
감 가 상 각 비	1,729,914		2,860,359	
지 급 임 차 료	85,846,698		105,706,387	
수 선 비	231,819		280,000	
보 험 료	4,380,870		3,706,100	
차 량 유 지 비			6,517,853	
운 반 비	8,817,241		10,113,928	
도 서 인 쇄 비	8,854,624		5,817,436	
사 무 용 품 비	287,605		55,656	
소 모 품 비	19,234,554		10,903,710	
지 급 수 수 료	19,983,599		40,460,655	
광 고 선 전 비	33,806,962		21,485,795	
건 물 관 리 비	4,444,310		6,301,080	
무 형 자 산 상 각 비	560,000		560,000	
Ⅴ. 영 업 이 익		**8,306,383**		**-24,204**
Ⅵ. 영 업 외 수 익		**31,616,323**		**18,772,947**
이 자 수 익	1,548,578		34,596	

손 익 계 산 서

제 11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에스엔인더스트리 (단위 : 원)

과 목	제 11(당)기		제 10(전)기	
	금 액		금 액	
외 환 차 익	13,900		47,685	
잡 이 익	30,053,845		18,690,666	
Ⅶ. 영 업 외 비 용		1,067,090		3,450,990
외 환 차 손			38,197	
기 부 금	600,000		500,000	
잡 손 실	467,090		2,912,793	
Ⅷ.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38,855,616		15,297,753
Ⅸ. 법 인 세 등		1,922,158		
법 인 세 등	1,922,158			
Ⅹ. 당 기 순 이 익		36,933,458		15,297,753

별첨 2

<주요 설비 품목의 거래형태>

(2021년 기준)

No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1	정제기		권장	에코시스템	X
2	린나이 가스튀김기 /RFA-328G	450*600*1000(LNG)	권장	다원종합주방	X
3	튀김바구니	RFA-328G	권장	다원종합주방	X
4	45박스 냉동고	KIS-KD45F 1220*695*1915	권장	다원종합주방	X
5	쇼케이스	650*590*1850	권장	다원종합주방	X
6	1500 테이블냉장고	KIS-KDT09R 900*700*800	권장	다원종합주방	X
7	스텐 2단 볶음작업대 (볶음팬에맞춰서2구타공)	1000*700*800	권장	다원종합주방	X
8	스텐 2단작업대	900*600*800	권장	다원종합주방	X
9	스텐 2단작업대	1800*600*800	권장	다원종합주방	X
10	싱크대	900*600*800	권장	다원종합주방	X
11	튀김기용 구시	600이상	권장	다원종합주방	X
12	경질 중국팬	지름 40cm	권장	다원종합주방	X
13	스텐건지게		권장	다원종합주방	X
14	금속헤라	10cm	권장	다원종합주방	X
15	대흥 사각양수 와이어바구니(대)	370*307*107	권장	다원종합주방	X
16	버너 스텐 원형바람막이	400	권장	다원종합주방	X
17	LNG 업소용 쌍관버너 외피 세트		권장	다원종합주방	X
18	믹싱볼6호	400	권장	다원종합주방	X
19	국산 채반 특대	305*235(상단), 270*200(하단) *60 (높이)mm	권장	다원종합주방	X
20	1/2 스텐밧드 6호		권장	다원종합주방	X
21	1/2 스텐밧드 8호	325*265*200	권장	다원종합주방	X
22	1/2 스텐밧드 뚜껑	325*265	권장	다원종합주방	X
23	1/2 스텐밧드 뚜껑(국자손잡이 타공/기성품)	325*265	권장	다원종합주방	X
24	1/2 스텐밧드 망(받침)	277*222*22	권장	다원종합주방	X
25	1/6 스텐밧드 6호		권장	다원종합주방	X
26	1/6 스텐밧드 뚜껑(국자손잡이 타공/기성품)		권장	다원종합주방	X
27	js pc계량컵	1,000cc	권장	다원종합주방	X
28	디지털저울	5kg	권장	다원종합주방	X
29	타이머	SATO BT182	권장	다원종합주방	X
30	악어집게	260mm	권장	다원종합주방	X
31	S/S 암코 집게	400mm	권장	다원종합주방	X

32	식용가위	D250mm 가량	권장	다원종합주방	X
33	건지게 망	200(고)	권장	다원종합주방	X
34	스텐 원형보관통	bmp3호	권장	다원종합주방	X
35	김치통(10호)		권장	다원종합주방	X
36	김치통(6호)		권장	다원종합주방	X
37	락앤락통	12L	권장	다원종합주방	X
38	소스통(듀얼락)	2L 물병(락앤락)	권장	다원종합주방	X
39	스텐국자	꿈에본 2호	권장	다원종합주방	X
40	소스통 대	400ml	권장	다원종합주방	X
41	플라스틱소분용기	명품 옹이 조미료병 3호 / 75*130cm	권장	다원종합주방	
42	멜라민 볶음국자	PVC왕대(소스5종, 물파우더,파우더,계육)	권장	다원종합주방	
43	멜라민 볶음국자(구멍)		권장	다원종합주방	
44	플라스틱 스페츌러	알뜰주걱/특대	권장	다원종합주방	
45	보온포트 3.5L		권장	본사(온라인구매)	
46	양파슬라이스		권장	본사(온라인구매)	
47	핸드믹서		권장	본사(온라인구매)	
48	명함	1개(500장)	권장	성원애드피아	
49	쿠폰	1개(500장)	권장	성원애드피아	
50	전단지	1연(8,000장)	권장	성원애드피아	
51	x배너	2장	권장	성원애드피아몰	
52	배너거치대	1개	권장	성원애드피아몰	
53	이벤트현수막	1장(600*1800)	권장	성원애드피아몰	
54	오픈전현수막	1장(2500*1500)	권장	성원애드피아몰	
55	홍보물 a3	22장	권장	본사	
56	홍보물 a4	44장	권장	본사	

<주요 품목의 거래형태>

(2021년 기준)

No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1	[꿀삐]브라질산 정육_부성	1박스/20kg	권장	부성식품	X
2	[꿀삐]치즈떡세트(고구마10,치즈9)	1박스/1kg*19봉	자율	하우스원푸드	X
3	[꿀삐]꿀삐파우더(7호)_신진	1박스/(5kg*4봉)	강제	하우스원푸드	X
4	[꿀삐]꿀삐소스_N_포엔	1박스/10kg*2통	강제	본사(온라인구매)	X
5	[꿀삐]핫바베큐 소스_포엔	1박스/(5kg*4통)	강제	포앤그린	X
6	[공통]마늘간장소스(치킨)_포엔	1박스/5KG*2통	강제	신진식품	X
7	[꿀삐]깐풍소스_포엔	1박스/5kg*4ea	강제	포앤그린	X
8	[꿀삐]사천소스_포엔	1박스/5kg*4ea	강제	포앤그린	X
9	[꿀삐]갈릭데리야끼소스_리치	1박스/(5kg*4)	강제	포앤그린	X
10	[꿀삐]어니언크림소스_리치	1박스/10kg	강제	리치푸드	X
11	[꿀삐]치즈버터 시즈닝_포엔	1박스/1kg*5봉	권장	리치푸드	X
12	[꿀삐]꿀삐 떡_씨밀레_송림	1박스(1.5kg*10봉)	권장	신진식품	X
13	[꿀삐]꿀삐_떡(진공)_한양	1박스/2kg*8봉	권장	송림식품	X
14	[꿀삐]소떡롤꼬치(우리소떡)_맛정	1박스/(10ea*6봉)	권장	한양식품	X
15	[꿀삐]치킨무B(포장)_두리	1박스(170g*60봉)	강제	두리식품	X
16	[꿀삐]검은깨	1박스/1kg*2봉	자율	본사(온라인구매)	X
17	[꿀삐]볶음땅콩(분태)	1박스/1kg*2봉	자율	본사(온라인구매)	X
18	[꿀삐]떡볶이 분말	1박스/1KG*5봉	권장	본사(온라인구매)	X
19	[꿀삐]깐풍소스2+사천소스2_포엔	1박스/5kg*4ea	강제	본사(온라인구매)	X
20	[꿀삐]델리치즈볼	1박스/(30EA*10봉)	권장	본사(온라인구매)	X
21	[꿀삐]고구마치즈볼	1박스/(30EA*10봉)	권장	본사(온라인구매)	X
22	[꿀삐]포장박스(소)-3호	1박스/200개	강제	에프앤에스식품	X
23	[꿀삐]포장박스(중)-14호	1박스/200개	강제	본사(온라인구매)	X
24	[꿀삐]포장박스(대)-5호	1박스/200개	강제	본사(온라인구매)	X
25	[꿀삐]콜팝속컵(16온스)	1박스/1000개	자율	포앤그린	X
26	[꿀삐]콜팝뚜껑(16온스)	1세트/300개	자율	본사(온라인구매)	X
27	[꿀삐]컵치맥뚜껑(16온스)	1박스/700개	자율	본사(온라인구매)	X
28	[꿀삐]인쇄 종이컵(6.5온스)	1박스/1,000개	강제	본사(온라인구매)	X
29	[꿀삐]6호종이컵(16온스콜닭컵)_서울	1박스/480개입	강제	포앤그린	X
30	[꿀삐]콜닭컵 비닐	1구형_1세트/200장	자율	포앤그린	X
31	[꿀삐]자바라스트로(혼합)_콜닭빨대	1세트/500개*3봉	자율	본사(온라인구매)	X
32	[꿀삐]9온스종이컵(무지/2호)	1박스/1000개	자율	본사(온라인구매)	X
33	[공통]포장비닐(대)	1박스/600장	강제	본사(온라인구매)	X
34	[공통]포장비닐(소)	1박스/600장	강제	본사(온라인구매)	X
35	[공통]포장비닐(대300,소300)	1박스/600장	강제	본사(온라인구매)	X
36	[공통]정제기 필터	1박스/100장	권장	디에이비피	X
37	[공통]파슬리 후레이크	1박스/100g*2EA	자율	디에이비피	X
38	[공통]요지	1박스/1000개*8봉	자율	디에이비피	X
39	[공통]소스포장용기	1세트/400개	자율	본사(온라인구매)	X
40	[공통]은박호일	1박스/300(폭)*30M(길이)x10개입	자율	본사(온라인구매)	X

별첨 3

<주요 품목의 공급가의 상·하한>

(2021년 기준)

No	품목	규격	거래 상대방	공급가 상한	공급가 하한
1	[꿀삐]브라질산 정육_부성	1박스/20kg	권장	93,390	84,900
2	[꿀삐]치즈떡세트(고구마10,치즈9)	1박스/1kg*19봉	자율	121,550	110,500
3	[꿀삐]꿀삐파우더(7호)_신진	1박스/(5kg*4봉)	강제	56,320	51,200
4	[꿀삐]꿀삐소스_N_포엔	1박스/10kg*2통	강제	63,690	57,900
5	[꿀삐]핫바베큐 소스_포엔	1박스/(5kg*4통)	강제	67,760	61,600
6	[공통]마늘간장소스(치킨)_포엔	1박스/5KG*2통	강제	45,760	41,600
7	[꿀삐]깐풍소스_포엔	1박스/5kg*4ea	강제	88,660	80,600
8	[꿀삐]사천소스_포엔	1박스/5kg*4ea	강제	88,660	80,600
9	[꿀삐]갈릭데리야끼소스_리치	1박스/(5kg*4)	강제	72,446	65,860
10	[꿀삐]어니언크림소스_리치	1박스/10kg	강제	41,250	37,500
11	[꿀삐]치즈버터 시즈닝_포엔	1박스/1kg*5봉	권장	52,140	47,400
12	[꿀삐]꿀삐 떡_씨밀레_송림	1박스(1.5kg*10봉)	권장	38,060	34,600
13	[꿀삐]꿀삐_떡(진공)_한양	1박스/2kg*8봉	권장	41,800	38,000
14	[꿀삐]소떡롤꼬치(우리소떡)_맛정	1박스/(10ea*6봉)	권장	68,200	62,000
15	[꿀삐]치킨무B(포장)_두리	1박스(170g*60봉)	강제	25,190	22,900
16	[꿀삐]검은깨	1박스/1kg*2봉	자율	31,350	28,500
17	[꿀삐]볶음땅콩(분태)	1박스/1kg*2봉	자율	24,695	22,450
18	[꿀삐]떡볶이 분말	1박스/1KG*5봉	권장	69,630	63,300
19	[꿀삐]깐풍소스2+사천소스2_포엔	1박스/5kg*4ea	강제	88,660	80,600
20	[꿀삐]델리치즈볼	1박스/(30EA*10봉)	권장	98,604	89,640
21	[꿀삐]고구마치즈볼	1박스/(30EA*10봉)	권장	98,604	89,640
22	[꿀삐]포장박스(소)-3호	1박스/200개	강제	26,510	24,100
23	[꿀삐]포장박스(중)-14호	1박스/200개	강제	29,260	26,600
24	[꿀삐]포장박스(대)-5호	1박스/200개	강제	31,900	29,000
25	[꿀삐]콜팝속컵(16온스)	1박스/1000개	자율	56,628	51,480
26	[꿀삐]콜팝뚜껑(16온스)	1세트/300개	자율	16,555	15,050
27	[꿀삐]컵치맥뚜껑(16온스)	1박스/700개	자율	97,350	88,500
28	[꿀삐]인쇄 종이컵(6.5온스)	1박스/1,000개	강제	25,630	23,300
29	[꿀삐]6호종이컵(16온스콜닭컵)_서울	1박스/480개입	강제	43,450	39,500
30	[꿀삐]콜닭컵 비닐	1구형_1세트/200장	자율	11,770	10,700
31	[꿀삐]자바라스트로(혼합)_콜닭빨대	1세트/500개*3봉	자율	15,015	13,650
32	[꿀삐]9온스종이컵(무지/2호)	1박스/1000개	자율	36,080	32,800
33	[공통]포장비닐(대)	1박스/600장	강제	42,790	38,900
34	[공통]포장비닐(소)	1박스/600장	강제	36,630	33,300
35	[공통]포장비닐(대300,소300)	1박스/600장	강제	38,390	34,900
36	[공통]정제기 필터	1박스/100장	권장	43,450	39,500
37	[공통]파슬리 후레이크	1박스/100g*2EA	자율	14,410	13,100
38	[공통]요지	1박스/1000개*8봉	자율	23,650	21,500
39	[공통]소스포장용기	1세트/400개	자율	19,360	17,600
40	[공통]은박호일	1박스/300(폭)*30M (길이)x10개입	자율	46,310	42,100
41					
42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 및 권장 가격

절 취 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사업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문)

본인은 『(주)에스엔인더스트리』로부터 꿀뼈닭강정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포함)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_____

_____

_____

_____

1.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시
2.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장소 :

3.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람 :
4. 가맹희망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주)에스엔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이상준 (인)	수 령 자 : (인) 생 년 월 일 : -